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① 실적기간 : 2011. 1. 1 ~ 2011. 12. 31 까지
- ② 성과분석 :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III 목 차 III

□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1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3
□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6
I. 기금운용개요 / 7	
II. 분석결과 / 7	
III. 성과분석 기초자료 / 11	
□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3
I. 기금운용개요 / 14	
II. 분석결과 / 14	
III. 성과분석 기초자료 / 18	
□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
I. 기금운용개요 / 21	
II. 분석결과 / 21	
III. 성과분석 기초자료 / 25	
□ 성과분석 지표 설명	27
I. 성과분석 지표 개요 / 28	
II. 성과분석 지표 총괄 / 30	
III. 지표별 세부 산정기준 / 31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1 성과분석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2 2012년도 성과분석 대상기금('11.1.1~'11.12.31까지 실적)

- '1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1.7)에 의거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구분	1그룹(3개)	2그룹(5개)	3그룹(4개)
대상기금	자활,노인복지,여성발전	식품진흥, 체육진흥, 중소기업육성, 재난관리, 재해구호	농림수산발전, 문예진흥, 환경보전, 남북교류협력
시행년도	'06년, '09년, '12년	'07년, '10년, '13년	'08년, '11년, '14년

▶ 분석대상기금(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 성과분석 내용[“공통지표”와 “개별지표”에 의한 분석]

- 공통지표(4) : 일반회계의존율,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일몰제 적용률, 주민공개 친화성에 대한 점수부여

구분	성과분석 지표	성과분석 (평균점수)	비고
공통지표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9.5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91.00	
	일몰제 적용률	-	
	주민공개 친화성	85.00	

- 개별지표(8) :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기금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정상적경비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운영 적정성, 수혜자 선정 투명성 등 지표에 의한 운용성과 계량화로 객관성 확보
- 기금별 성과 종합분석

구 분	실무부서	평균점수	비고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86.22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85.47	
여성발전기금	여성청소년과	86.06	

4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1 총 평

- (세입구조)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은 대체로 양호하나, 기금조성률 등 분석 대상기금 세입의 구조는 저금리 상황에서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세출관리)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등 기금세출의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재정관리) 채권관리의 적정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몰제 적용률은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로 분석됨
- (투명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양호하나, 주민공개 친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개하지 못한 점이 미흡한 점으로 분석됨

2 지표별 분석결과

-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양호
 - 일반·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상태임
 - '11년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은 일반·기타특별회계 총 결산액의 0.48%(196억5천1백만원)로 나타남

전출금(백만원)	결산액(백만원)	비율
19,651	4,076,514	0.48%

-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 양호
 - 기금의 보유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써(250억원) 활용율이 양호한 상태임

○ 일몰제 적용 실적 : 미흡

- '06년 이후 제·개정하는 기금조례에 대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기금 존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몰제 적용 실적이 전무하여 개선이 요구됨
- 일몰제 적용 대상기금 9개 기금(의무 2, 임의 7 / 법적·의무적 설치기금 3 제외)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몰제 적용을 권고[예산과-3983('12.5.3)]

○ 주민공개회 친화성 : 미흡

- 정기적인 '재정공시' 등을 통해 기금운용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수단(보도 자료 등)을 통한 공개가 미흡하여 성과점수가 낮은 요인으로 작용

○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우수

- '11년 성과분석 대상기금 총 운용액(6,341,737천원) 중 일반·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없음

○ 목표대비 기금조성을 : 미흡

- 당초 목표액에 맞게 조성(100%)한 것이 바람직한 상태임
- 당초 조성목표 대비 조성률은 평균 85.8%로 저금리 상황으로 미흡

조성금액(천원)		조성목표액(천원)	비율
자활	310,578	392,440	79.14%
노인	55,514	61,000	91.01%
여성	101,402	116,216	87.25%

○ 계획적인 운용 비율 : 미흡

- 당초 계획된 사업액에 맞게 지출(100%)한 것이 바람직한 상태임
- 당초계획 대비 집행은 평균 82.51%로 용자신청이 적었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계획 대비 집행이 미흡

기금집행액(천원)		당초사업계획(천원)	비율
자활	594,700	700,000	84.96%
노인	48,000	61,000	78.69%
여성	75,500	90,000	83.89%

※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로 집행 제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저금리 상황에서 당초 수입계획보다 조성액의 부족으로 집행을 저조

○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비율 : 우수**

- 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목적 외 경상경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 금년도 분석대상 기금의 집행액(718,200천원)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경상적 경비 비율 : 우수**

- 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목적외 경상경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상적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 금년도 분석대상 기금은 경상적 경비 비율이 없음

○ **대상기금의 채권관리 : 우수**

-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의 비율로 낮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 기한 도래 채권 중(114,000천원) 미수액이 없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우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50% 이상), 전문가 비율(30% 이상), 소집회의 개최, 참석율(70% 이상) 등 운영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 우수**

- 조례에 수혜자 선정기준을 두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사회 복지 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 09. 0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 10. 0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및 생활보호법 폐지
- 2001. 01. 05 :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조례2792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11	595	2,385	253	765	△512	1,873	3,000 (통합관리기금예탁)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초수급자 취·창업을 통한 자활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세점포임대 용자(지역자활센터-사업단,공동체)의 목적사업에 6건 31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형성저축(행복 키움통장) 매칭금지원 440명 285백만원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금으로 일반예산과는 중복되지 않으며, 사업실적 및 효과가 좋으므로 자활기금은 필요한 사업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0	534	89	700	595	8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 (285백만원, 440명)	○ 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 (285백만원, 440명)	100%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400백만원, 6건)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310백만원, 6건)	78%
'12년	○ 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 (285백만원, 440명)	○ 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 (285백만원, 440명)	100%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400백만원, 6건)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6월현재 3건 153백만원	38%
	○ 자활활성화 지원사업 (80백만원, 3건)	○ 자활활성화 지원사업 (80백만원, 3건)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 재원 : 국비,도비 출연금,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 운용수익 - 용도 : 사업단·공동체 사업 자금, 전세점포임대 용자지원, 자산형성저축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01년 이후 출연금이 없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실정으로 실제수입보다(용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고유목적사업, 용자금지출)이 많아 현재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기초수급자의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자산형성저축지원 및 전세점포임대 용자지원	700	전세점포임대 적기용자 및 대여 후 회수 등을 고려할 때 자활지원사업의 신축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로 사업수행은 어려움.	상
합 계	70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국비 80%, 도비 20%의 원금을 조성하고 이후 원금의 이자수입 및 용자금회수 등 기금 운용 수익으로 원활히 운용되고 있음

※ 2011년말 현재액 : 2,385백만원(예탁금 30억원 별도)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2,934	%	3,203	%	2,980	%	백만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9	9.5	286	8.9	133	4.5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428	82.8	2,749	85.8	2,669	89.6	
	예수금							
	이자수입	227	7.7	168	5.3	159	5.3	
	기타수입					19	0.6	
지 출	합 계	2,934	%	3,203	%	2,980	%	
	고유목적사업비	50	1.7	281	8.8	285	9.6	
	융자금	135	4.6	253	7.9	310	10.4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749	93.7	2,669	83.3	2,385	8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의 창업·운영(전세점포 자금 및 사업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자활기금 활성화 유도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광역단위 교육지원 및 경영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의 자활기금 집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음.

Ⅲ. 자활기금 성과분석 기초자료

(단위 : 천원)

구분	점수	비고
평균점수	86.22	

1. 총괄기금 일반회계 의존율

기금전출금(a)	공제대상금액(b)	기금전출금A=a-b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19,651,496	0	19,651,496	4,076,514,180	99.52	99.52

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기본60점)

설치여부	통합기금조성액(A)	기금 총 조성액(B)	평가점수	통합기금 활용액(A)	통합기금조성액(B)	평가점수	총량점수
Y(20점)	25,000,000	249,117,290	1.00	25,000,000	25,000,000	10.00	91.00

3. 일몰제적용율

대상기금수(A)	일몰제적용기금수(B)	지표값(B/A)*100	평가점수	비고
2	0	-	-	-

4. 주민공개친화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점수	비고
Y	N	N	N	85.00	

5. 기금별 일반·특별회계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A)	개별기금운용규모(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2,979,862	100.00	100.00

6. 기금조성율

당해연도 적립액(A)	조성목표액(B)	비율(A/B)	점수
310,578	392,440	79.14	79.14

7. 계획적운영비율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594,700	700,000	84.96	84.96

8. 고유목적사업비율

고유목적사업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100	점수
594,700	594,700	100.00	100.00

9. 경상적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594,700	100.00	100.00

10. 채권관리 적정성

기한도래 채권 증 미수액 (A)	기한도래 채권(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114,000	100.00	100.00

11.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평가점수
Y	Y	Y	Y	100.00

12.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평가점수
Y	N	Y	Y	95.00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노인 장애인 복지 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7.11.21 :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1997~2009 :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0억원 달성
- 2010~현재 : 노인복지증진 및 자립증진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5	48	2,067	62	62	0	2.06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 도 노인인구는 현재 291,919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6%를 차지, 200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내 인구의 22.2%를 차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한 만큼,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금으로 2009년 당초 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여 2010년부터 당해년도 수입금내에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로 사업을 추진,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사업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경상적 비용지출 억제를 위해 행사성 사업 선정을 배제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지출을 위해 당해연도 수입금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	20	57	61	48	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실실버공동작업장운영(5백만원) ○농촌일손지원사업(5백만원) ○채소가꾸기사업단운영(5백만원) ○실버운동코디네이터(5백만원) ○노인자원봉사 실버약단(5백만원) ○수목관리사양성사업(12백만원) ○게이트볼 강사단 운영(10백만원)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5백만원) ○기령회-전통문화재현(5백만원) ○독거노인 효도지팡이제공(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실실버공동작업장운영(4백만원) ○농촌일손지원사업(4백만원) ○채소가꾸기사업단운영(3.5백만원) ○실버운동코디네이터(3.5백만원) ○노인자원봉사 실버약단(3.5백만원) ○수목관리사양성사업(10백만원) ○게이트볼 강사단 운영(8백만원)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3.5백만원) ○기령회-전통문화재현(4백만원) ○독거노인 효도지팡이제공(4백만원) 	79%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노인회지원등 (20백만원) ○일자리창출사업(4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노인회지원등 (20백만원) 	3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4조 ·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사업 · 효 진흥 및 장려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단체, 법인 등이 다수 참여로 소기의 목적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수목관리사사업	10백만원	○노인유휴인력 적기활용	상
② 농촌일손돕기사업	4백만원	○농촌농한기인력 한시활용	상
③게이트볼강사사업	8백만원	○노인이 노인 강습(노-노사업)	상
합 계	2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 도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
- 기금조성액 : 2,067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2,033	%	2,080	%	2,115	%	백만원
	출연금	300	14.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623	79.8	2,033	97.7	2,060	97.4	
	예수금							
	이자수입	110	5.4	47	2.3	55	2.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33	%	2,080	%	2,115	%	
	고유목적사업비			20	1.0	48	2.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033	100	2,060	99.0	2,067	97.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어, 노인의 복지증진 향상과, 노동생산성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및 확대가 필요함

Ⅲ.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기초자료

(단위 : 천원)

구분	점수	비고
평균점수	85.47	

1. 총괄기금 일반회계 의존율

기금전출금(a)	공제대상금액(b)	기금전출금A=a-b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19,651,496	0	19,651,496	4,076,514,180	99.52	99.52

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기본60점)

설치여부	통합기금조성액(A)	기금 총 조성액(B)	평가점수	통합기금 활용액(A)	통합기금조성액(B)	평가점수	총량점수
Y(20점)	25,000,000	249,117,290	1.00	25,000,000	25,000,000	10.00	91.00

3. 일몰제적용율

대상기금수(A)	일몰제적용기금수(B)	지표값(B/A)*100	평가점수	비고
2	0	-	-	-

4. 주민공개친화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점수	비고
Y	N	N	N	85.00	

5. 기금별 일반·특별회계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A)	개별기금운용규모(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2,115,866	100.00	100.00

6. 기금조성율

당해연도 적립액(A)	조성목표액(B)	비율(A/B)	점수
55,514	61,000	91.01	91.01

7. 계획적운영비율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48,000	61,000	78.69	78.69

8. 고유목적사업비율

고유목적사업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100	점수
48,000	48,000	100.00	100.00

9. 경상적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48,000	100.00	100.00

10. 채권관리 적정성

기한도래 채권 증 미수액 (A)	기한도래 채권(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	-	-	-

11.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평가점수
Y	Y	Y	Y	100.00

12.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평가점수
N	Y	Y	Y	95.00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여성 청소년 과]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년도 : 1997. 09. 26
- 기금조성기간 : 1997 ~ 2003 (7년간)
- 기금조성액 : 3,170백만원 (도비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1	75	1,170	115	90	25	1,195 (통합관리기금예탁) 2,00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년도별	지원단체수	지원액(백만원)	비고
계	110	515백만원	비영리 공익 여성단체 지원
2007	31	123백만원	
2008	28	124백만원	
2009	20	99백만원	
2010	19	93백만원	
2011	12	76백만원	

○ 성과분석

- 잘된 점 : 꾸준한 홍보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권에 관한
발전 모색
- 미흡한 점 :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2년부터 모니터링으로 사업 분석 및 평가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등

-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이념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도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금 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3	93	100%	90	76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건강가족문화사업(37백만원) ○여성인권보호사업(14백만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19백만원) ○기타필요사업(20백만원)	○건강가족문화사업(37백만원) ○여성인권보호사업(14백만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19백만원) ○기타필요사업(6백만원)	84%
'12년	○건강가족문화사업 (41백만원) ○여성인권보호사업(19백만원) ○여성녹색생활실천사업(15백만원) ○기타필요사업(15백만원)	○건강가족문화사업 (41백만원) ○여성인권보호사업(19백만원) ○여성녹색생활실천사업(15백만원) ○기타필요사업(15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29조 전라북도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3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사업 -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금융상품의 이자율 저하로 기금마련에 어려움 있으나, 여성의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출산장려, 건전한 가족문화 구현 등을 위해 다수의 단체 참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없	음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방법 : 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 법적근거 :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기금설치 및 조성)
- 조성금액 : 3,170백만원(통합관리기금 예탁 20억원 / 예치금 11.7억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1,230	%	1,237	%	1,246	%	백만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05	89.8	1,131	91.4	1,145	91.9	
	예수금							
	이자수입	125	10.2	106	8.6	101	8.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30	%	1,237	%	1,246	%	
	고유목적사업비	99	8.0	93	7.5	76	6.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131	92.0	1,144	92.5	1,170	93.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 한정된 재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출산장려,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
-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Ⅲ.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기초자료

(단위 : 천원)

구분	점수	비고
평균점수	86.06	

1. 총괄기금 일반회계 의존율

기금전출금(a)	공제대상금액(b)	기금전출금A=a-b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19,651,496	0	19,651,496	4,076,514,180	99.52	99.52

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기본60점)

설치여부	통합기금조성액(A)	기금 총 조성액(B)	평가점수	통합기금 활용액(A)	통합기금조성액(B)	평가점수	총량점수
Y(20점)	25,000,000	249,117,290	1.00	25,000,000	25,000,000	10.00	91.00

3. 일몰제적용율

대상기금수(A)	일몰제적용기금수(B)	지표값(B/A)*100	평가점수	비고
2	0	-	-	-

4. 주민공개친화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점수	비고
Y	N	N	N	85.00	

5. 기금별 일반·특별회계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A)	개별기금운용규모(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1,246,009	100.00	100.00

6. 기금조성율

당해연도 적립액(A)	조성목표액(B)	비율(A/B)	점수
101,402	116,216	87.25	87.25

7. 계획적운영비율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75,500	90,000	83.89	83.89

8. 고유목적사업비율

고유목적사업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100	점수
75,500	75,500	100.00	100.00

9. 경상적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0	75,500	100.00	100.00

10. 채권관리 적정성

기한도래 채권 증 미수액 (A)	기한도래 채권(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	-	-	-

11.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평가점수
Y	Y	Y	Y	100.00

12.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1번질답	2번질답	3번질답	4번질답	평가점수
Y	Y	Y	Y	100.00

성과분석 지표 설명

1 성과분석 지표 개요

①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공통)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결산 기준) 대비 기금전출금의 비율
- 일반회계 등의 의존정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공통)

-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여부, 기금 총 조성액 대비 통합기금 조성액의 비율, 통합기금 조성액 대비 활용액 비율
- 유사·중복기금의 통합을 촉진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

③ 일몰제 적용률 (공통)

- 2006년 이후 설치 또는 개정된 기금 중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비율 (개별 법령에 강제규정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제외)
-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검토함으로써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 혹은 불필요한 기금 정비를 유도하는 지표

④ 주민공개 친화성 (공통)

-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⑤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개별 기금 세입 중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비율
- 개별기금의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의존정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⑥ 기금조성률

-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실제 조성액의 비율
- 기금조성액의 계획성, 충분성 등을 제고하고 기금목표액의 조기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⑦ 계획적 운영비율

- 연초 계획사업비 대비 집행실적
- 계획적인 기금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⑧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 기금의 본래 목적을 위한 경비에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⑨ 경상적 경비비율

- 기금지출액에 대한 경상적 경비의 비율
-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⑩ 채권관리 적정성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⑪ 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⑫ 수혜자 선정 투명성

-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2 성과분석 지표 총괄

지표별		발전 방향	산 정 기 준	평가방법
공 통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공통)	↓	$\frac{\text{기금전출금}}{\text{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 \times 100(\%)$	100점을 기준으로 역산정 예) 100-25=75
	통합관리기금 구성·활용율 (공통)	↑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하고, 설치여부 20점, 통합기금조성을 10점, 통합기금활용률 10점의 추가점수를 부여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20점)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10점) $\frac{\text{통합관리기금 조성액}}{\text{기금 총 조성액}} \times 100(\%)$ ③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0점) $\frac{\text{통합관리기금 활용액}}{\text{통합관리기금 조성액}} \times 100(\%)$	
	일몰제 적용율 (공통)	↑	$\frac{\text{일몰적용 기금수}}{\text{대상 기금수}} \times 100(\%)$	
	주민공개 친화성 (공통)	100	100점을 기준으로 4개항목 중 1개항목 미이행시 5점씩 감소	
개 별 기 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frac{\text{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text{개별기금 운용규모}} \times 100(\%)$	100점을 기준으로 역산정 예) 100-30=70
	기금조성을	↑	$\frac{\text{해당연도 조성액}}{\text{조성목표액}} \times 100(\%)$	100%초과시 100점으로 산정 예) 110 ⇒ 100점
	계획적운영비율	↑	$\frac{\text{기금 지출액}}{\text{당초 계획 사업비}} \times 100(\%)$	100%초과시 100점으로 산정 예) 110 ⇒ 100점
	고유목적사업비율	↑	$\frac{\text{고유목적 사업비}}{\text{기금지출액}} \times 100(\%)$	
	경상적경비비율	↓	$\frac{\text{경상적 경비}}{\text{기금지출액}} \times 100(\%)$	100점을 기준으로 역산정 예) 100-30=70
	채권관리 적정성	↓	$\frac{\text{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액}}{\text{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times 100(\%)$	100점을 기준으로 역산정 예) 100-30=70
	위원회운영 적정성	100	100점을 기준으로 4개항목 중 1개항목 미이행시 5점씩 감소	
수혜자선정 투명성	100	100점을 기준으로 4개항목 중 1개항목 미이행시 5점씩 감소		

3 지표별 세부 산정기준

1.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	------	------	-------

개요(정의)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대비 기금전출금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 유도
해석 및 특징	-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100 - \left(\frac{\text{기금전출금}}{\text{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 \times 100(\%) \right)$ <p>※ 기금전출금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의 기금전출금(702) ※ 기금전출금 규모는 감채기금·지방채상환기금(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제외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의 세출총액</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기금전출금 총액(a)	공제대상(b)	기금전출금 (A=a-b)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출총액(B)	지표값(%) 100-((A/B)×100)
		·감채기금 000,000 ·지방채상환기금 000,0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개별기금 세입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	------	------	-------

개요(정의)	- 기금통합 촉진 및 통합자금의 효율적 관리
정책목적	- 유사·중복기금의 통합을 촉진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
해석 및 특징	- 통합기금의 예탁율이 높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여유자금 합리적 관리
산정공식	<p>-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하고, 설치여부 20점, 통합기금조성률 10점, 통합기금활용률 10점의 추가점수를 부여</p> <p>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20점)</p> <p>②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10점)</p> $\frac{\text{통합관리기금 조성액}}{\text{기금 총 조성액}} \times 100(\%)$ <p>※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기금결산보고서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총 조성액 : 기금결산보고서의 “1.조성총괄” 당해연도말 조성액 -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p> <p>③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0점)</p> $\frac{\text{통합기금 활용액}}{\text{통합기금 조성액}} \times 100(\%)$ <p>※ 통합기금 활용액 : 기금결산시 지출총액 중 예치금을 뺀 금액</p>
참고사항/ 상세설명	- 통합기금은 별도의 부서(예: 예산부서)가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이 있어야 하며,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도 별도의 부서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통합기금으로 인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조성률·활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 통합관리기금 설치 여부 ()				
	① 설치하고 있다 ② 설치하지 않았다				
	-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단위 : 천원)				
	통합기금 조성액(A)	기금 총 조성액(B)	지표값(%) (A/B)×100		
제출서식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단위 : 천원)				
	통합기금 활용액(A)	통합기금 조성액(B)	지표값(%) (A/B)×100		
	- 지표값				
	기본점수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지표값
6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 기금결산보고서, 개별 기금 및 통합기금 예치증서 사본		작성자 (작성부서)		

3. 일몰제 적용률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	------	------	-------

개요(정의)	- 2006년 이후 신설 혹은 관련 법령·조례가 제·개정된 기금 중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 일몰제 적용율이 높을수록 효율적 운영
산정공식	- 대상기금수 : '06년 이후 신설 및 관련법령·조례가 제·개정된 기금 (개별법령에 설치 의무화된 기금 제외) ※ 관련법령·조례 제·개정은 단순 직제개편이나 타 조례 개정 등에 의해 자동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 ※ 개별법령에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은 관련 법령(조례는 제외)상에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몰제 적용 기금수 / 대상기금 수 × 100 - 분모인 대상기금수가 0인 경우 산정 제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table border="1"> <tr> <td>전체기금수</td> <td>제외기금수</td> <td>대상기금수 (A)</td> <td>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B)</td> <td>지표값 C=(B/A)×100</td> </tr> <tr> <td></td> <td></td> <td>전체기금수 - 제외기수</td> <td></td> <td></td> </tr> </table>	전체기금수	제외기금수	대상기금수 (A)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B)	지표값 C=(B/A)×100			전체기금수 - 제외기수						
	전체기금수	제외기금수	대상기금수 (A)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B)	지표값 C=(B/A)×100										
			전체기금수 - 제외기수												
<table border="1"> <tr> <td>기금명</td> <td>대상여부</td> <td>관련법령 및 조문</td> <td>일몰제규정여부</td> <td>조례제개정일</td> </tr> <tr> <td>○○기금</td> <td>○ / ×</td> <td>* 대상여부 ×인 경우 관련법령명 및 조문내용을 규정</td> <td>○ / ×</td> <td>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여부 ×인 경우 관련법령명 및 조문내용을 규정	○ / ×	00.00.00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여부 ×인 경우 관련법령명 및 조문내용을 규정	○ / ×	00.00.00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 단순 직제개편이나 타 조례 개정 등에 의해 자동 개정되는 경우는 조례 개정일에 반영하지 않음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2006년 이후 신설 및 조례개정된 기금 현황 ▶ 관련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여부 ▶ 관련법령상 의무적 기금 규정 여부를 규정한 조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주민공개 친화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	------	------	-------

개요(정의)	- 기금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공개
정책목적	-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한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해석 및 특징	- 재정공시 수준 이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있는지 분석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 1개면 85점, 2개면 90점, 3개면 95점,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		
	구 분	확인	
	① 재정공시에 기금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 ×	
	② 재정공시에 결산자료외에 구체적 내용(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음		
	③ 재정공시 이외에 다른 수단(시정소식지, 보도자료 등)에도 기금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④ 재정공시 이외에 다른 수단(시정소식지, 보도자료 등)에도 결산자료외에 구체적 내용(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음		
	점 수		
※ 각 문항별로 증빙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홈페이지 재정공시 확인 ▶ 재정공시외 다른 수단을 통한 공개내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별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	------	------	-------

개요(정의)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정책목적	-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 유도
해석 및 특징	-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100 - \left(\frac{\text{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text{개별 기금 운용규모}} \times 100(\%) \right)$ <p>※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 : 개별 기금 세입결산액 중 일반·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일반·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을 기금전입금(224-04)으로 결산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개별기금 운용규모 : 개별 기금 세입결산 총액 (실제수납액)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일반·특별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개별 기금 운용규모(A)	일반·특별회계 전입금(B)	지표값(%) $100 - ((A/B) \times 100)$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기금조성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	------	------	-------

개요(정의)	- 기금조성목표액에 대한 해당연도 조성액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조성의 계획성, 충분성 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실제 기금조성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건전성 높은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frac{\text{해당연도 조성액}}{\text{조성목표액}}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조성액 : 기금결산서(조성 총괄)의 해당연도 조성액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제외한 금액) ※ 조성목표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입액 - 분모인 개별기금 조성목표액이 0인 기금에 대해서는 산정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개별기금의 조성목표액에 따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해당연도 적립액(A)	조성목표액(B)	지표값(%) (A/B)×100
	기금명		b1	(a)
	기금명		b2	(b)
	(계)			(a+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조성목표액이 0인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장검증시 확인사항(✓)</u> ▶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계획적 운영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연초 계획사업비 대비 집행실적		
정책목적	- 계획적인 기금운영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연초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frac{\text{기금 지출액}}{\text{당초 계획 사업비}} \times 100(\%)$ <p>※ 기금집행액 : 기금결산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계획사업비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지표유형	제출서식		
	구분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제출서식	지표값(%) (A/B)×100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단위 : 천원)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8.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운영의 본래 목적을 위한 경비지출 유도		
해석 및 특징	-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해석		
산정공식	$\frac{\text{고유목적 사업비}}{\text{기금지출액}}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비: : 기금결산보고서의 고유목적사업비 + 용자금 +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기금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높을수록 바람직		

지표유형	(단위 : 천원)			
	구분	고유목적사업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100
제출서식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고유목적사업비 및 용자금 기금지출총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경상적 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	------	------	-------

개요(정의)	- 기금지출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파악하여 운영의 경직성 평가
정책목적	-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 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가 많을수록 존치의 필요성이 낮음
산정공식	$100 - \left(\frac{\text{경상적 경비}}{\text{기금지출액}} \times 100(\%) \right)$ <p>※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다만,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제외 ※ 기금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우활동 제외) ※ 적립중인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은 상태

제출서식	(단위: 천원)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명			(a)
	기금명 (계)			(a+b)/2
	<p>※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p>			
검증자료	<p>※ <u>현장검증시 확인사항(✓)</u></p> <p>▶ 기금결산보고서</p>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0. 채권관리 적정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 융자성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미수채권을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left(\frac{\text{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text{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times 100(\%) \right)$ <p>※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 : 해당연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해당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A)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B)	지표값 100-((A/B)×100)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u>현장검증시 확인사항(✓)</u> ▶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1.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	------	------	-------

개요(정의)	- 기금별 · 관리위원회 설치 실적
정책목적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 · 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 관련 위원회의 설치 여부로 분석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통합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성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포괄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목표 · 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 1개면 85점, 2개면 90점, 3개면 95점,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확인</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 50% 이상</td> <td></td> </tr> <tr> <td>② 위원 중 전문가 비율 30%이상</td> <td></td> </tr> <tr> <td>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td> <td></td> </tr> <tr> <td>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이상</td> <td></td> </tr> <tr> <td>점 수</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전문가 비율 30%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이상		점 수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전문가 비율 30%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이상													
점 수													
검증자료	<종합점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기금명</td> <td>(a)</td> </tr> <tr> <td>기금명</td> <td>(b)</td> </tr> <tr> <td>(계)</td> <td>(a+b)/2</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구분	점수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 · 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	------	------	-------

개요(정의)	- 기금 집행의 적정성 판단계로서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을 분석
정책목적	-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
해석 및 특징	- 집행부의 자의적 운용 억제 및 기금운용의 내실성 분석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존수혜자에 대한 점검: 2008년 기금지출시 이전 수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 1개면 85점, 2개면 90점, 3개면 95점,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확인</th> </tr> </thead> <tbody> <tr> <td>①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음</td> <td></td> </tr> <tr> <td>② 조례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및 훈령 등이 있음</td> <td></td> </tr> <tr> <td>③ 수혜자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음</td> <td></td> </tr> <tr> <td>④ 기존 수혜자에 대한 점검을 하였음</td> <td></td> </tr> <tr> <td>점 수</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확인	①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음		② 조례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및 훈령 등이 있음		③ 수혜자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④ 기존 수혜자에 대한 점검을 하였음		점 수	
구 분	확인												
①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음													
② 조례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및 훈령 등이 있음													
③ 수혜자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④ 기존 수혜자에 대한 점검을 하였음													
점 수													
검증자료	<종합점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기금명</td> <td>(a)</td> </tr> <tr> <td>기금명</td> <td>(b)</td> </tr> <tr> <td>(계)</td> <td>(a+b)/2</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구분	점수												
기금명	(a)												
기금명	(b)												
(계)	(a+b)/2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수혜자선정기준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결재서류 등	<table border="1"> <tr> <td>연락처</td> <td></td> </tr> <tr> <td>작성자 (작성부서)</td> <td></td> </tr> </table>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